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843호)

2023.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9. 27.

다. 회 부 일 : 2023.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비과세 특례와 인지세 면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금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8조의5 및 제116조).

Ⅲ. 검토의견

1.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서삼석의원안(23023), 윤영석의원안, 진선미의원안)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한도: 1명당 <u>1천만원</u> 이하의 출자금 ☐ 세율: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이후 1년간('26. 1. 1. ~ 12. 31.)은 5% 분리과세하고, 그 이후('27. 1. 1. ~)에는 9% 분리과세 함 * 2022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기한 연장	☐ 비과세 출자금 한도 상향조정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1명당 <u>3천만원</u> 이하의 출자금 ☐ 세율: (현행과 같음)

* 서삼석의원안 2023. 6. 30. 제출(의안번호 23023), 윤영석의원안 2023. 7. 11. 제출(의안번호 23186), 진선미의원안 2023. 9. 27. 제출(의안번호 24843)

☐ 조합 등에 대한 조합원등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에 200만원을 한도로 신설된 후 1987년 500만원, 1992년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등 6차례 적용기한이 연장¹⁾되었음.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연혁]

구 분	1976년	1978년	1987년	1991년	1992년	2009년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한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또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²⁾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참고로 동 조세특례와 관련된 상호금융기관 별 2021년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음.

- 1) 참고로 동 조세특례와 유사하게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따른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운영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1명당 예탁금 “3,000만원”을 한도(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 상향)로 운영되고 있음.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년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	출자배당 (백만원)	1인당 평균 (천원)	이용고배당 (백만원)	1인당 평균 (천원)
농협	20,845,886	365,128	17.5	473,745	22.7
수협	120,216	14,764	122.8	15,560	129.4
산림조합	813,539	9,941	12.2	3,291	4
신협	6,744,341	97,271	14.0	5,777	1
새마을금고	7,487,620	202,377	27.0	29,430	4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3,724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2023년에는 4,987억원, 2024년에는 5,216억원의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저축지원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금액	5,859	4,863	3,760	3,724	4,987	5,216

* 조특법 제88조의5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및 제89조의3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등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한도를 상향하면 도·농간 소득격차의 축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³⁾.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17년	38,239	67.6	49,016	82.3	34,590	58.1	59,558
2018년	42,066	64.9	51,836	80.0	36,476	56.3	64,795
2019년	41,182	62.4	48,415	73.4	37,499	56.9	65,960
2020년	45,029	65.5	53,187	77.3	37,105	53.9	68,788
2021년	47,759	64.5	52,392	70.8	38,133	51.5	74,029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08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 말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경제조사”)

참고로 2022년 실시된 동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동 조세특례가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분석된 바 있음.

둘째, 동 제도의 확대를 통해 상호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3)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3/4정도가 저소득층에 주어지고 있고,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된 바 있음.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 (비과세 출자금)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인원 비율 : 75.1%,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에서 2천만원 이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75.7%로 나타남.

2022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이유로 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조합원 비율이 약 70% 이상이고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출자자가 많아졌다는 인식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이유로 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단위: %, 명, 점)

구 분	응답비율					응답자 수	평균
	1	2	3	4	5		
농협	0.0	1.7	20.3	55.0	23.0	300	4.0
신협	0.0	4.6	24.3	57.2	13.8	152	3.8
새마을금고	0.0	3.3	21.2	57.0	18.5	151	3.9

* “조합 가입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에서 5로 갈수록 긍정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제도에 따른 출자자가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점)

구 분	응답비율					응답자 수	평균
	1	2	3	4	5		
농협	0.0	5.3	22.0	58.0	14.7	300	3.8
신협	0.0	2.6	19.7	62.5	15.1	152	3.9
새마을금고	0.0	4.6	20.5	58.3	16.6	151	3.9

*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1에서 5로 갈수록 긍정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비과세 출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면 농어민의 조합 등 상호금융에 대한 보다 큰 출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상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셋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되어 물가상승 등의 경제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992년 44.685, 2022년 107.710으로 약 2.4배로 증가⁴⁾하였음.

□ 다만, 개정안의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실제 조합 등 출자자의 상당수는 비과세 한도액인 1,000만원과 무관한 소액 출자자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출자금 최대액은 약 1억원 내외이지만 중간값은 농협이 100만원, 신협이 25만원, 새마을금고가 20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이고,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비중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 10% 수준으로 조사⁵⁾되었음.

4)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5)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조사에 따른 출자금 가입금액]

(단위: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농 협	666.6	1,582.7	1	100	15,000
신 협	617.9	1,614.3	1	25	12,000
새마을금고	444.3	1,008.4	1	20	9,000

자료: 2022년 조세특례심층평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둘째,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동 조세특례 실적이 300억원을 초과⁶⁾하여 의무심층평가 대상⁷⁾이 될 정도로 조세특례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의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조세특례의 출자금은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면 출자자의 자산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3,724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2023년에는 4,987억원, 2024년에는 5,216억원의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임.

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155